

상 고 장

사 건 2015나39769

상 고 인 1. 유

(원 고)

2. 명

3. 양

4. 김

5. 강

6. 김

7. 김

8. 안

9. 박

10. 신

11. 전

12. 조

13. 강

14. 고

15. 박

16. 조

17. 최

18. 최

피 상 고 인 1.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
(피 고) 서울 중구 을지로 65 (에스케이 티-타워) (100-999)
 대표이사 하성민

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.02.17에 선고한 판결정본
을 2016. 02. 26.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.

원판결의 표시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상 고 취 지

1.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.
 2. 소송비용은 1심, 2심, 3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상 고 이 유

주후 제출하겠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소송위임장

2016.03.02

상고인(원고) 소송대리인
변호사 조형수

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귀중